|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245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은 2020년 12월 11일 세관총서 서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9일 세관총서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7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예악봉  2020년 12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이하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및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 화물의 관세, 수입세 감면 또는 면제(이하 감면세) 사무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이 본 방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수출입 화물 감면세 신청인(이하 ‘감면세 신청인’)은 그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감면세 화물 후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주관세관에 감면세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유효하며, 작성 란에 제대로 기입한 신청자료를 구비해 제출하고, 또한 자료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과 규범성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감면세 심사 확인**  **제4조** 감면세 신청인이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따라 감면세 수출입 관련 화물을 신청할 경우 화물 수출입 신고 전, 관련 정책에서 정한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자격을 향유하는 증명자료를 취득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근거로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4.1 <수출입 화물 세금 면제 신청서>  4.2 사업단위 법인증서 또는 국가기관 설립 문건, 사회단체 법인등기증서, 민간 비기업단위 법인등기증서, 기금회(재단) 법인등기증서 등 증명자료  4.3 수출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화물의 제품 상황 자료  **제5조** 주관세관은 감면세 심사 확인 신청 수리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감면세 신청인 주체 자격,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입 화물 관련 상황에 대해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 등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더불어 수출입 화물 과세, 감세 또는 면제의 확인 의견서를 발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이하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관세관이 본 조 제1관에서 정한 기한내 확인 의견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1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타부처 관리 직책과 연관되어 관련 부처와 좀 더 협상이 필요하거나 유관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경우  5.2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자 화물에 대한 화학실험, 검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조 제2관에서 정한 상황이 생길 경우, 주관세관은 상황 해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수출입 화물 감면세의 확인 의견서를 발급하고,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감면세 신청인이 기발급한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 유효기간내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변경 또는 철회를 해주어야 한다. 변경할 경우, 주관세관은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다시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고, 감면세 신청인은 유효기간내 신고지 세관에 유관 수출입 화물 신고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유효기간내 처리할 수 없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내 주관세관에 연장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는 1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은 종료된다. 감면세 신청인이 해당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에 열거된 화물에 대해 수출입 감면세가 필요한 경우,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다시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또는 그 실시조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출입 화물 과세 통관 후,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신청해 추가로 처리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3장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제9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에 유관 화물에 대해 납세담보로 우선 통관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9.1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또는 그 실시조치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  9.2 주관세관이 이미 감면세 심사 확인 신청을 수리하였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9.3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이 이미 국무원 비준을 거쳤고, 구체적인 실시조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주관세관이 감면세 신청인이 해당 정책을 향유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9.4 기타 세관총서의 승인을 거친 상황  **제10조** 감면세 신청인이 유관 화물을 납세담보로 우선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할 경우, 화물 수출입 신고 전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5 업무일 내 담보 처리 허가여부 의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9조에서 정한 상황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이하 <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고, 신고지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관 규정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처리 불허 통지서>를 제작 발급한다.  **제11조** 신고지 세관은 주관세관이 제작 발급한 <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 및 감면세 신청인이 제공한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가한 재산과 권리로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의 납세담보 수속을 처리한다.  **제12조** <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에 확정된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관세관은 한차례 연장해 줄 수 있고, 연장기한 역시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특수 상황으로 여전히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속세관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본 방법 제9조에서 정한 유관 상황이 여전히 계속될 경우, 주관세관은 유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 등을 근거로 상응하는 납세담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고, 또한 감면세 신청인에게 유관 상황을 고지함과 동시에 신고지 세관에 감면세 신청인에게 납세담보 연장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제13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기한 만료 전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취득해 세관에 과세, 감면세 관련 수속을 처리할 경우, 신고지 세관은 납세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면세 화물의 관리**  **제14조**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입 감면세 화물의 관리감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4.1 선박 및 비행기: 8년  14.2 자동차: 6년  14.3 기타 화물: 3년  관리감독 연한은 화물 수입 통관일로부터 계산한다.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 관리감독 연한내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 감면세 화물을 보관, 사용하고 법에 의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은 매년 6월 30일(당일 포함)전까지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비정상 명단에 올린다.  감면세 신청인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이나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감면세 화물 후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할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감면세 신청인이 보충 보고를 한 후, 세관은 수리해 줄 수 있다.  **제16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화물은 주관세관이 심사 동의한 지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유관 수입 세수우대정책 실시조치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감면세 화물의 사용 지점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경우, 사용 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감면세 화물이 주관세관 관할지역에서 벗어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주관세관에 타지역 관리감독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세관 심사 동의를 거쳐 전입지 세관이 통지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전입지 세관 관할지로 옮길 수 있고, 또한 전입지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감면세 화물의 사용이 다른 지역에서 종료된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즉시 전입지 세관에 타지역 관리감독 수속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입지 세관 심사 동의를 거쳐 주관세관에 통지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주관세관 관할지로 다시 옮겨야 한다.  **제17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분리, 합병, 주주변경, 제도 개정 등 주체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내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주체변경 상황 및 유관 감면세 화물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 심사를 거쳐 추가 과세가 필요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기존 감면세 신청인 주관세관에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감면세 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이월 등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파산, 폐지, 해산, 제도 개정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감면세 신청인이 종료되고 권리의무 승계인이 있을 경우, 본 방법 제17조 규정을 참조하여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감면세 신청인이나 기타 법에 의거 관세 및 수입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산 청산일로부터 30일내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 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받은 감면세 화물이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 보충납부 수속 처리 시에 유관 허가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감면세 화물은 상술한 수속 종결일로부터 세관 관리감독이 해제된다.  **제19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 해외 반송 또는 수출을 요구할 경우,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감면세 화물은 해외 반송 또는 수출일부터 세관의 관리감독에서 해제되며, 세관은 더 이상 해외 반송 또는 수출한 감면세 화물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제20조** 감면세 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감독 연한이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관리감독은 해제된다.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화물에 대해 감면세 신청인이 사전 관리감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 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받은 감면세 화물이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 보충납부 수속 처리 시에 유관 허가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감면세 화물은 상술한 수속 종결일로부터 세관 관리감독이 해제된다.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 관리감독 해제일로부터 1년내 주관세관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 감면세 화물 관리감독 해제 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1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및 그 후 3년 이내,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찰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유관 기업, 단위가 감면세 화물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제5장 감면세 화물의 저당, 양도, 다른 용도로 전환**  **제22조** 감면세 화물의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유관 수속을 처리하고,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저당, 양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수입 시, 허가증 제출이 면제된 감면세 화물에 대해 감면세 신청인이 주관세관에 저당, 양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타 처분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할 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할 경우, 관련 수속을 추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의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로 은행이나 비은행 금용기관에 대출 저당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이 법에 의거 인가한 재산 및 권리를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유효한지 작성내용은 규범에 맞는지 등을 심사하고, 필요시 감면세 신청인의 경영상황,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처리 허가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처리 불허 통지서>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로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에 대출 저당을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 주관세관이 감면세 화물로 대출 저당 처리를 동의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저당 계약서, 대출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내 저당 계약서 및 대출 계약서를 주관세관에 비안(등록) 하여야 한다.  저당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의 체결일자가 같지 않을 경우, 후에 체결된 날짜에 맞춰 상술한 규정의 비안(등록) 시한을 계산한다.  **제26조**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대출 저당 기한 만료 전 주관세관에 대출 저당 연장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연장 처리 허가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연장 처리 불허 통지서>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고 동등한 감면세 세수우대혜택을 누리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이전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27.1 감면세 화물의 전출 신청인은 전출지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전출지 주관세관은 심사 동의 후, 전입지 주관세관에 통지한다.  27.2 감면세 화물의 전입 신청인은 전입지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처리한다. 전입지 주관세관은 심사 동의 후,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제작하여 발급한다.  27.3 이전된 감면세 화물의 관리감독 연한은 연속으로 계산하고, 전입지 주관세관은 남은 관리감독 연한내 이전된 감면세 화물에 대한 후속 관리감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전입지 세관과 전출지 세관이 동일한 세관일 경우, 본 조 제1관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8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지 않거나 혹은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나 동등한 감면 세수우대대우를 누리지 않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 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받은 감면세 화물이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 보충납부 수속 처리 시에 유관 허가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감면세 화물은 상술한 수속 종결일로부터 세관 관리감독이 해제된다.  **제29조** 감면세 화물이 양도, 사전 관리감독 해제 및 감면세 신청인에게 주체변경, 법에 의한 종료 상황 발생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보충 과세가 필요할 경우,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은 화물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을 기초로 감면세 화물 수입시간과 관리감독 연한의 비율에 따라 상각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감면세 화물 기존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  감면세 화물의 기존 수입시간은 화물 통관일로부터 월별 계산한다. 1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30조** 본 방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경우 아래 상황에 따라 화물 수입시간의 종료일로 확정하여야 한다.  30.1 감면세 화물을 양도할 경우, 주관세관이 감면세 신청인의 보충납부 수속 신청을 접수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30.2 감면세 신청인이 세관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감면세 화물을 양도할 경우, 화물 실제 양도일을 종료일로 한다. 실제 양도일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발견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30.3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주체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등기일을 종료일로 한다.  30.4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파산, 폐지, 해산 또는 기타 법에 의거 경영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이 감면세 신청인에게 파산을 선고한 날이나 감면세 신청인이 법에 의거 생산경영활동 종료를 확정받은 날을 종료일로 한다.  30.5 감면세 화물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해제할 경우, 주관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의 보충납부 수속 신청을 접수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31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우선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에서 비준한 사용단위,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본 조 제1관에서 일컫는 기타 용도로의 전환은 아래의 상황을 포함한다.  31.1 감면세 화물을 감면세 신청인 이외의 기타 단위에게 넘겨 사용하게 한 경우    31.2 기존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1.3 기존에 정해진 구역에서 감면세 화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본 조 제1관에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우선 기타 용도로 전환하는 시간에 맞춰 상응하는 세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용도로 전환하는 시간을 확정하기 불가능할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담보금액은 감면세 화물의 남은 관리감독 연한 동안 보충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하여 세금 보충납부가 필요한 경우,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은 화물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을 기초로 보충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시간과 관리감독 연한의 비율에 따라 상각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감면세 화물 기존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  상술한 계산 공식 중, 보충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시간은 감면세 화물이 기타 용도로 전환된 실제시간으로 일별 계산하고, 1일 실제 사용이 8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을 초과할 시 모두 1일로 계산한다.  **제33조** 세관은 감면세 화물의 대출 저당, 이전, 기타 용도로 전환, 타지역 관리감독, 주체변경, 해외 반송 또는 수출, 사전 관리감독 해제 등 후속관리 업무를 처리할 시, 감면세 신청인의 신청 수리일로부터 10 업무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상술한 규정된 기한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특수 상황이 해소된 날로부터 10 업무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분리, 합병, 주주변경, 제도 개정 등 주체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 폐지, 해산, 제도 개정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당사자가 유관 규정에 따라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주체변경이나 종료 상황 및 유관 감면세 화물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수출입 화물 감면세 신청인은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본 방법에 따라 세관에 감면세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하는 독립적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재단), 국가기관; 구체적인 실시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단위가 수권을 받고, 본 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주관세관의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 동의를 거쳐, 해당 세관에 감면세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단위 소속 비법인 분지기구; 세관총서 확인을 거친 기타조직을 가리킨다.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 감면세 신청인이 기업법인일 경우 주관세관은 기업법인등기를 처리한 등록지 세관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재단), 국가기관 등 비기업 법인조직일 경우 주관세관은 소재지 세관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투자 프로젝트 단위 소속 비법인 분지기구일 경우 주관세관은 그 영업등기지로 처리한 세관을 의미한다. 아래의 특수한 상황은 제외한다.  35.1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과 감면세 신청인이 기업법인등기를 처리한 등록지 세관 또는 영업등기지로 처리한 세관이 동일 세관이 아닐 경우,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이 주관세관이 된다.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가 여러 세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유관 세관의 공통된 상급 세관이나 공통된 상급 세관이 지정한 세관이 주관세관이 된다.  35.2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실시조치에 명확히 규정된 상황  35.3 세관총서가 비준한 기타 상황  **제36조** 본 방법에서 열거된 문서 양식은 세관총서에서 별도 제정하여 공고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본 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9일 세관총서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7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海关总署令第245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已于2020年12月11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21年3月1日起施行。2008年12月29日海关总署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79号）同时废止。  署长 倪岳峰  　　2020年12月21日   1.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工作，保障行政相对人合法权益，优化营商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及有关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进出口货物减征或者免征关税、进口环节税（以下简称减免税）事务，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海关依照本办法实施管理。  **第三条**　进出口货物减免税申请人（以下简称减免税申请人）应当向其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核确认、减免税货物税款担保、减免税货物后续管理等相关业务。  减免税申请人向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相关业务，应当按照规定提交齐全、有效、填报规范的申请材料，并对材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和规范性承担相应的法律责任。   1. **减免税审核确认**   **第四条** 减免税申请人按照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的规定申请减免税进出口相关货物，应当在货物申报进出口前，取得相关政策规定的享受进出口税收优惠政策资格的证明材料，并凭以下材料向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  （一）《进出口货物征免税申请表》；  　　（二）事业单位法人证书或者国家机关设立文件、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民办非企业单位法人登记证书、基金会法人登记证书等证明材料；  （三）进出口合同、发票以及相关货物的产品情况资料。  **第五条** 主管海关应当自受理减免税审核确认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对减免税申请人主体资格、投资项目和进出口货物相关情况是否符合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规定等情况进行审核，并出具进出口货物征税、减税或者免税的确认意见，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确认通知书》（以下简称《征免税确认通知书》）。  有下列情形之一，主管海关不能在本条第一款规定期限内出具确认意见的，应当向减免税申请人说明理由：  　　（一）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规定不明确或者涉及其他部门管理职责，需要与相关部门进一步协商、核实有关情况的；  　　（二）需要对货物进行化验、鉴定等，以确定其是否符合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规定的。  有本条第二款规定情形的，主管海关应当自情形消除之日起10个工作日内，出具进出口货物征税、减税或者免税的确认意见，并制发《征免税确认通知书》。  **第六条** 减免税申请人需要变更或者撤销已出具的《征免税确认通知书》的，应当在《征免税确认通知书》有效期内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随附相关材料。  经审核符合规定的，主管海关应当予以变更或者撤销。予以变更的，主管海关应当重新制发《征免税确认通知书》。  **第七条** 《征免税确认通知书》有效期限不超过6个月，减免税申请人应当在有效期内向申报地海关办理有关进出口货物申报手续；不能在有效期内办理，需要延期的，应当在有效期内向主管海关申请办理延期手续。《征免税确认通知书》可以延期一次，延长期限不得超过6个月。  《征免税确认通知书》有效期限届满仍未使用的，其效力终止。减免税申请人需要减免税进出口该《征免税确认通知书》所列货物的，应当重新向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  **第八条** 除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或者其实施措施另有规定外，进出口货物征税放行后，减免税申请人申请补办减免税审核确认手续的，海关不予受理。   1. **减免税货物税款担保**   **第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减免税申请人可以向海关申请办理有关货物凭税款担保先予放行手续：  　　（一）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或者其实施措施明确规定的；  （二）主管海关已经受理减免税审核确认申请，尚未办理完毕的；  （三）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已经国务院批准，具体实施措施尚未明确，主管海关能够确认减免税申请人属于享受该政策范围的；  （四）其他经海关总署核准的情形。  **第十条** 减免税申请人需要办理有关货物凭税款担保先予放行手续的，应当在货物申报进出口前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随附相关材料。  主管海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出具是否准予办理担保的意见。符合本办法第九条规定情形的，主管海关应当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准予办理减免税货物税款担保通知书》（以下简称《准予办理担保通知书》），并通知申报地海关；不符合有关规定情形的，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不准予办理减免税货物税款担保通知书》。  **第十一条** 申报地海关凭主管海关制发的《准予办理担保通知书》，以及减免税申请人提供的海关依法认可的财产、权利，按照规定办理减免税货物的税款担保手续。  **第十二条** 《准予办理担保通知书》确定的减免税货物税款担保期限不超过6个月，主管海关可以延期1次，延长期限不得超过6个月。特殊情况仍需要延期的，应当经直属海关审核同意。  减免税货物税款担保期限届满，本办法第九条规定的有关情形仍然延续的，主管海关可以根据有关情形可能延续的时间等情况，相应延长税款担保期限，并向减免税申请人告知有关情况，同时通知申报地海关为减免税申请人办理税款担保延期手续。  **第十三条** 减免税申请人在减免税货物税款担保期限届满前取得《征免税确认通知书》，并已向海关办理征税、减税或者免税相关手续的，申报地海关应当解除税款担保。   1. **减免税货物的管理**   **第十四条** 除海关总署另有规定外，进口减免税货物的监管年限为：    （一）船舶、飞机：8年；    （二）机动车辆：6年；  （三）其他货物：3年。    监管年限自货物进口放行之日起计算。    除海关总署另有规定外，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应当按照海关规定保管、使用进口减免税货物，并依法接受海关监管。    **第十五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应当于每年6月30日（含当日）以前向主管海关提交《减免税货物使用状况报告书》，报告减免税货物使用状况。超过规定期限未提交的，海关按照有关规定将其列入信用信息异常名录。  　　减免税申请人未按照前款规定报告其减免税货物使用状况，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核确认、减免税货物税款担保、减免税货物后续管理等相关业务的，海关不予受理。减免税申请人补报后，海关可以受理。  **第十六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货物应当在主管海关审核同意的地点使用。除有关进口税收优惠政策实施措施另有规定外，减免税货物需要变更使用地点的，减免税申请人应当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说明理由；经主管海关审核同意的，可以变更使用地点。  减免税货物需要移出主管海关管辖地使用的，减免税申请人应当向主管海关申请办理异地监管手续，并随附相关材料。经主管海关审核同意并通知转入地海关后，减免税申请人可以将减免税货物运至转入地海关管辖地，并接受转入地海关监管。  减免税货物在异地使用结束后，减免税申请人应当及时向转入地海关申请办结异地监管手续。经转入地海关审核同意并通知主管海关后，减免税申请人应当将减免税货物运回主管海关管辖地。  **第十七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发生分立、合并、股东变更、改制等主体变更情形的，权利义务承受人应当自变更登记之日起30日内，向原减免税申请人的主管海关报告主体变更情况以及有关减免税货物的情况。  　　经原减免税申请人主管海关审核，需要补征税款的，权利义务承受人应当向原减免税申请人主管海关办理补税手续；可以继续享受减免税待遇的，权利义务承受人应当按照规定申请办理减免税货物结转等相关手续。    **第十八条** 在海关监管年限内，因破产、撤销、解散、改制或者其他情形导致减免税申请人终止，有权利义务承受人的，参照本办法第十七条的规定办理有关手续；没有权利义务承受人的，原减免税申请人或者其他依法应当承担关税及进口环节税缴纳义务的当事人，应当自资产清算之日起30日内，向原减免税申请人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货物的补缴税款手续。  进口时免予提交许可证件的减免税货物，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补办许可证件的，减免税申请人在办理补缴税款手续时还应当补交有关许可证件。有关减免税货物自办结上述手续之日起，解除海关监管。  **第十九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要求将减免税货物退运出境或者出口的，应当经主管海关审核同意，并办理相关手续。  　　减免税货物自退运出境或者出口之日起，解除海关监管，海关不再对退运出境或者出口的减免税货物补征相关税款。  **第二十条** 减免税货物海关监管年限届满的，自动解除监管。  对海关监管年限内的减免税货物，减免税申请人要求提前解除监管的，应当向主管海关提出申请，并办理补缴税款手续。进口时免予提交许可证件的减免税货物，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补办许可证件的，减免税申请人在办理补缴税款手续时还应当补交有关许可证件。有关减免税货物自办结上述手续之日起，解除海关监管。  　　减免税申请人可以自减免税货物解除监管之日起1年内，向主管海关申领《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减免税货物解除监管证明》。  **第二十一条** 在海关监管年限内及其后3年内，海关依照《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等有关规定，对有关企业、单位进口和使用减免税货物情况实施稽查。  **第五章 减免税货物的抵押、转让、移作他用**  **第二十二条** 在减免税货物的海关监管年限内，经主管海关审核同意，并办理有关手续，减免税申请人可以将减免税货物抵押、转让、移作他用或者进行其他处置。  **第二十三条** 在海关监管年限内，进口时免予提交许可证件的减免税货物，减免税申请人向主管海关申请办理抵押、转让、移作他用或者其他处置手续时，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补办许可证件的，应当补办相关手续。  **第二十四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要求以减免税货物向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办理贷款抵押的，应当向主管海关提出申请，随附相关材料，并以海关依法认可的财产、权利提供税款担保。  主管海关应当对减免税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是否齐全、有效，填报是否规范等进行审核，必要时可以实地了解减免税申请人经营状况、减免税货物使用状况等相关情况。经审核符合规定的，主管海关应当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准予办理减免税货物贷款抵押通知书》；不符合规定的，应当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不准予办理减免税货物贷款抵押通知书》。  减免税申请人不得以减免税货物向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以外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办理贷款抵押。  **第二十五条** 主管海关同意以减免税货物办理贷款抵押的，减免税申请人应当自签订抵押合同、贷款合同之日起30日内，将抵押合同、贷款合同提交主管海关备案。  　　抵押合同、贷款合同的签订日期不是同一日的，按照后签订的日期计算前款规定的备案时限。  **第二十六条** 减免税货物贷款抵押需要延期的，减免税申请人应当在贷款抵押期限届满前，向主管海关申请办理贷款抵押的延期手续。  经审核符合规定的，主管海关应当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准予办理减免税货物贷款抵押延期通知书》；不符合规定的，应当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不准予办理减免税货物贷款抵押延期通知书》。  **第二十七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需要将减免税货物转让给进口同一货物享受同等减免税优惠待遇的其他单位的，应当按照下列规定办理减免税货物结转手续：  　　（一）减免税货物的转出申请人向转出地主管海关提出申请，并随附相关材料。转出地主管海关审核同意后，通知转入地主管海关。  （二）减免税货物的转入申请人向转入地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核确认手续。转入地主管海关审核同意后，制发《征免税确认通知书》。  （三）结转减免税货物的监管年限应当连续计算，转入地主管海关在剩余监管年限内对结转减免税货物继续实施后续监管。  转入地海关和转出地海关为同一海关的，参照本条第一款规定办理。  **第二十八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需要将减免税货物转让给不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或者进口同一货物不享受同等减免税优惠待遇的其他单位的，应当事先向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货物补缴税款手续。进口时免予提交许可证件的减免税货物，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补办许可证件的，减免税申请人在办理补缴税款手续时还应当补交有关许可证件。有关减免税货物自办结上述手续之日起，解除海关监管。  **第二十九条** 减免税货物因转让、提前解除监管以及减免税申请人发生主体变更、依法终止情形或者其他原因需要补征税款的，补税的完税价格以货物原进口时的完税价格为基础，按照减免税货物已进口时间与监管年限的比例进行折旧，其计算公式如下：  补税的完税价格=减免税货物原进口时的完税价格×  减免税货物已进口时间自货物放行之日起按月计算。不足1个月但超过15日的，按1个月计算；不超过15日的，不予计算。  **第三十条** 按照本办法第二十九条规定计算减免税货物补税的完税价格的，应当按以下情形确定货物已进口时间的截止日期：  　　（一）转让减免税货物的，应当以主管海关接受减免税申请人申请办理补税手续之日作为截止之日；  （二）减免税申请人未经海关批准，擅自转让减免税货物的，应当以货物实际转让之日作为截止之日；实际转让之日不能确定的，应当以海关发现之日作为截止之日；  　　（三）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发生主体变更情形的，应当以变更登记之日作为截止之日；  （四）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发生破产、撤销、解散或者其他依法终止经营情形的，应当以人民法院宣告减免税申请人破产之日或者减免税申请人被依法认定终止生产经营活动之日作为截止之日；  　　（五）减免税货物提前解除监管的，应当以主管海关接受减免税申请人申请办理补缴税款手续之日作为截止之日。  **第三十一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需要将减免税货物移作他用的，应当事先向主管海关提出申请。经主管海关审核同意，减免税申请人可以按照海关批准的使用单位、用途、地区将减免税货物移作他用。  本条第一款所称移作他用包括以下情形：  　　（一）将减免税货物交给减免税申请人以外的其他单位使用；  　　（二）未按照原定用途使用减免税货物；  （三）未按照原定地区使用减免税货物。  除海关总署另有规定外，按照本条第一款规定将减免税货物移作他用的，减免税申请人应当事先按照移作他用的时间补缴相应税款；移作他用时间不能确定的，应当提供税款担保，税款担保金额不得超过减免税货物剩余监管年限可能需要补缴的最高税款总额。  **第三十二条** 减免税申请人将减免税货物移作他用，需要补缴税款的，补税的完税价格以货物原进口时的完税价格为基础，按照需要补缴税款的时间与监管年限的比例进行折旧，其计算公式如下：  补税的完税价格=减免税货物原进口时的完税价格×  上述计算公式中需要补缴税款的时间为减免税货物移作他用的实际时间，按日计算，每日实际使用不满8小时或者超过8小时的均按1日计算。  **第三十三条** 海关在办理减免税货物贷款抵押、结转、移作他用、异地监管、主体变更、退运出境或者出口、提前解除监管等后续管理业务时，应当自受理减免税申请人的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  因特殊情形不能在前款规定期限内作出决定的，海关应当向申请人说明理由，并自特殊情形消除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  **第六章 附 则**  **第三十四条** 在海关监管年限内，减免税申请人发生分立、合并、股东变更、改制等主体变更情形的，或者因破产、撤销、解散、改制或者其他情形导致其终止的，当事人未按照有关规定，向原减免税申请人的主管海关报告主体变更或者终止情形以及有关减免税货物的情况的，海关予以警告，责令其改正，可以处1万元以下罚款。  **第三十五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进出口货物减免税申请人，是指根据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和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可以享受进出口税收优惠，并依照本办法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相关业务的具有独立法人资格的企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国家机关；具体实施投资项目，获得投资项目单位授权并经按照本条规定确定为主管海关的投资项目所在地海关同意，可以向其申请办理减免税相关业务的投资项目单位所属非法人分支机构；经海关总署确认的其他组织。  　　减免税申请人的主管海关，减免税申请人为企业法人的，主管海关是指其办理企业法人登记注册地的海关；减免税申请人为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基金会、国家机关等非企业法人组织的，主管海关是指其住所地海关；减免税申请人为投资项目单位所属非法人分支机构的，主管海关是指其办理营业登记地的海关。下列特殊情况除外：  　　（一）投资项目所在地海关与减免税申请人办理企业法人登记注册地海关或者办理营业登记地海关不是同一海关的，投资项目所在地海关为主管海关；投资项目所在地涉及多个海关的，有关海关的共同上级海关或者共同上级海关指定的海关为主管海关；  　　（二）有关进出口税收优惠政策实施措施明确规定的情形；  （三）海关总署批准的其他情形。  **第三十六条** 本办法所列文书格式由海关总署另行制定并公告。  **第三十七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八条** 本办法自2021年3月1日起施行。2008年12月29日海关总署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79号）同时废止。 |